

# 교원 경력 환산에 관한 내규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9.8.26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교원 경력 환산에 관한 내규

**제1조** (목적) 이 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.)에 전임교원, 강사 및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예정된 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2.20., 2019.8.26>

**제2조** (적용범위) 이 내규의 적용범위는 신입 및 재직교원의 직위부여 및 호봉산정 등을 위한 교육·연구경력의 환산에 적용한다.<개정 2007.12.20>

**제3조** (경력의 환산율) 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인정율은 <별표 1>에 의한다.  
<개정 2007.12.20., 2019.8.26>

### 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내규의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② (지침의 폐지)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'신임교원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에 관한 지침'은 폐지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(규정명칭 변경)의 시행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의 시행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 <개정 2007.12.20>

교원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인정율

경 력 내 용	환산 인정률(%)	경 력 내 용	환산 인정률(%)
<b>1. 교육 경력</b>			
가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	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자의 연구 경력	석사과정 재학년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)
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	100		
② 사관학교의 교관(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)으로 근무한 경력	100	나.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	
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100	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. 단,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	박사과정 재학년수×0.7 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
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	60	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 경력	석사과정 재학년수×0.7 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)
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 경력	100(주당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족시 시간당 10%씩 감산한다)		
다.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		다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
① 중·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	70	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연구(실험실습을 포함한다.)를 대학·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100
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50	라.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	
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70	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	100
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50		
다. 조교 및 체육코치 등		<b>3. 산업체 등 근무경력</b>	
① 대학(총)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	70	가.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	
② 공인된 체육단체(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) 및 각 대학의 체육 코치	70	①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근무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70
		②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	70
		③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70
<b>2. 연구경력</b>		나.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	
가. 최종 학위취득자	석·박사과정 재학년수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여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)	① 공과계대학(공업교육대학, 공업교육학과 포함) 졸업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	70
①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 경력			

경 력 내 용	환산 인정률(%)	경 력 내 용	환산 인정률(%)
- 대기업체 등 - 중기업체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④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인적자원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- 대기업체 등 - 중기업체 다.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 ② 변호사 개업기간 ③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변리사 개업기간 ④ 한국 해양대학, 부산 수산대학,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 1등 항해사(기관사) 이상 면허 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,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	70  70 70 70  70 70 70 100 70	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될 경우 라. 의사 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② 의과대학 졸업자의 (한)의원 개업기간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정 기관 전문 의사 근무 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,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 경력 마. 성직자 근무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할 경력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할 경력 바.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. 예·체능 관련 단체 주요 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·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	70  70 70 70  70 70 70 70 70 70